

문서번호	총무과-8525
결재일자	2016.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455호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윤현상	김기석	서문석	고재식	김경호	04/07 김기동
협 조					
	의회법무팀장	신수일			

#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관 리 국**  
 ( 총 무 과 )

#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단체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인력확충 계획분을 정원에 반영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으로써 조직관리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I 관련근거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4561호, 15.12.14.)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시달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28호, 14.12.8.)

## II 개정이유

- 2016년도 복지인력 확충 대책 및 자치단체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조직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
- 5급 이상 정원을 직급별로 각각 구분하여 투명한 인력관리 운영

## III 개정내용

- **정원의 총수 증원 : 총 8명**(안 제2조<정원의 총수>)
  - 복지인력 확충대책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14.10.29.)에 따른 '16년도 정원 증원분 : **7명**(복지직6, 행정직1)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분 : **1명**
- **5급 이상 직급별(3, 4, 5급)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 구분**
- **개 정(안)**
  - 정원의 총수 : 1,149명 ⇒ **1,157명 (+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126명 ⇒ **1,134명(+8명)**
    - ※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23명 (변동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현 행】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총 계	1,149	1,149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144	1,144			
5급이상 소계	64	35	3	11	15
6급이하 소계	1,078	1,078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4	4			

【개정안】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총 계	1,157	1,157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152	1,152			
3급	1	1			
4급	7	5	1	1	
5급	56	29	2	10	15
6급이하 소계	1,086	1,086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4	4			

IV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2016. 4. 6. ~ 4. 25. (20일)
  -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2016년도 복지인력 확충 대책 및 자치단체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조직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

## 2. 주요골자

가. 정원의 총수 개정

- 1) 제2조(정원의 총수)의 “1,149명”을 “1,157명”으로 변경
- 2) 제2조제1호의 “1,126명”을 “1,134명”으로 변경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현 행】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49	1,149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144	1,144			
	5급이상 소계	64	35	3	11	15
	6급이하 소계	1,078	1,078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4	4			

**[개 정]**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총 계		1,157	1,157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152	1,152				
	3급	1	1				
	4급	7	5	1	1		
	5급	56	29	2	10	15	
	6급이하 소계		1,086	1,086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4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2016. 4. 6. ~ 4. 25. (20일)
-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폐지 등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149명”을 “1,157명”으로 한다.

제1호의 “1,126명”을 “1,134명”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은 별지와 같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총 계		1,157	1,157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152	1,152			
	3급	1	1			
	4급	7	5	1	1	
	5급	56	29	2	10	15
	6급이하 소계	1,086	1,086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4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2016년도 복지인력 확충대책 및 자치단체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조직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의 “1,149명”을 “1,157명”으로, 제2조제1호의 “1,126명”을 “1,134명”으로 변경
-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의 내용 중 총계 “1,149명”을 “1,157명”으로, 일반직 계 “1,144명”을 “1,152명”으로, 6급이하 소계 “1,078명”을 “1,084명”으로 변경하고, 5급이상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직급별(3급, 4급, 5급)으로 구분 표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450-7113, FAX 2201-1988, E-mail : auhappy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광진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149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1,126명</u> 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광진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157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u>1,134명</u> 2. (현행과 같음)</p>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49</u>	<u>1,149</u>			
정무직계	1	1			
일반직계	<u>1,144</u>	<u>1,144</u>			
5급이상 소 계	<u>64</u>	<u>35</u>	<u>3</u>	<u>11</u>	<u>15</u>
6급이하 소 계	<u>1,078</u>	<u>1,078</u>			
전 문 경력관 계	2	2			
별정직계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157</u>	<u>1,157</u>			
정무직계	1	1			
일반직계	<u>1,152</u>	<u>1,152</u>			
3급	<u>1</u>	<u>1</u>			
4급	<u>7</u>	<u>5</u>	<u>1</u>	<u>1</u>	
5급	<u>56</u>	<u>29</u>	<u>2</u>	<u>10</u>	<u>15</u>
6급이하 소 계	<u>1,086</u>	<u>1,086</u>			
전 문 경력관 계	2	2			
별정직계	4	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복지분야 등 정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확대

### 2. 비용추계의 전제

- 복지인력(사회복지직) 정원 순증분(6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7월부터 3년간 1인당 연간 30,000천원으로 개산(概算)되어, 국비:시비:구비(50:25:25)의 비율로 인건비 지원
- 기타 복지인력(행정직) 정원 순증분(1명) 및 CCTV 관제센터 인력(1명)은 1인당 연간 30,000천원으로 산정하고 2016년 7월부터 구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시 운용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6개월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국비	45,000	90,000	90,000	90,000	90,000	405,000
	시비	22,500	45,000	45,000	45,000	45,000	202,500
	구비	52,5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472,500
	소계(a)	12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080,000
세출	국비	45,000	90,000	90,000	90,000	90,000	405,000
	시비	22,500	45,000	45,000	45,000	45,000	202,500
	구비	52,5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472,500
	소계(b)	12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080,000
□ 총 비용(a-b)		0	0	0	0	0	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시비(보조금)		67,500	135,000	135,000	135,000	135,000	607,500
구비	지방세수입	52,5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472,5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2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080,000

### 5. 덧붙이는 의견

- 사회복지인력 순증분(6명)은 자치구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이후에도 관계부처 협의·결정을 통해 현 지원비율 유지 예상
- 기타 정원 순증분(2명)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증원하되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책임성 있게 운용

### 6. 작성자 : 행정7급 윤현상(450-7113)